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8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8. 2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8. 3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9. 8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가. 제안이유

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대여점을 설치 운영 중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장난감대여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장난감대여점 위탁계약 기간 개정(안 제16조제2항)
- 2) 위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(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- 본 조례개정안은 『사회복지사업법』 및 『영유아보육법』에 근거하여 설치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이 보육관련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장난감대여점의 운영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과 동일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
- 『영유아보육법』은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이 되고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의 2제2항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“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의 개정은 적합하다 사료됨.
- 본 조례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이 늘어나므로 장난감대여점 주관 부서에서는 장난감대여점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.

※ 참고자료 : 관련법규

[관련법규]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1. 6. 30] [법률 제17785호, 2020. 12. 29, 일부개정]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3. 6. 4., 2018. 12. 24.>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[시행 2021. 4. 1] [대통령령 제31576호, 2021. 3. 30, 타법개정]

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각 육아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 12. 8., 2013. 12. 4., 2019. 6. 4.>

1.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
- 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(教具)의 제공 또는 대여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

(일부개정) 2020.07.09 조례 제1332호

- 제13조(설치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5.11.19>
-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19>
-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19, 2018.5.3>
- ④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19.>

제14조(기능)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[전문개정 2015.11.19]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1. 6. 30]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4. 5. 20., 2016. 2. 3., 2016. 5. 29., 2017. 10. 24.>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12. 31]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, 타법개정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**위탁계약기간**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 불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